

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
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조성태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○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제정된 「충청북도 자체감사 규칙」의 감사기관과 일치하도록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컨설팅감사 적용 범위(안 제3조)

- 1. 의회사무처, 합의행정기관의 추가

-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추가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적극행정 촉진, 행정의 적법성·타당성 고양, 규제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“사전 컨설팅감사”의 적용범위를, 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는 자체감사의 적용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.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은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「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」을 두고 있음. 또한 「지방자치법」 제185조, 제190조 및 제191조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」을 두고 있고, 이 같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「충청북도 자체감사 규칙」을 제정하여 시행 중임.
- 한편 본 조례는 “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”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, 「충청북도 자체감사 규칙」의 대상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,
 - 「충청북도 자체감사 규칙」 제2조에 감사대상 기관을 정하면서, 2013. 12. 27. 일부개정으로 “의회사무처”를, 2023. 2. 17. 일부개정으로 “합의제행정기관”을 추가하였음에도,
 - 본 조례 제3조에서 사전 컨설팅감사의 적용범위에는 위 두 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.
- 본 조례안은 위와 같이 도 자체감사의 대상 기관과 사전 컨설팅감사의 적용범위를 일치시켜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,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